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1부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 단체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3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